##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52 제출연월일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 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 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8세 미만인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21조(결격사유)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			
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			
다.			
<u>1. 미성년자</u>	1. 18세 미만인 사람	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